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460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문수・김정호

박홍배 • 한정애 • 정태호

송옥주 · 남인순 · 김준혁
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·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.

그런데,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
·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·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
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·보급할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·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

8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·보급할 수 있다.
-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·법인 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⑧ 제6항에 따른 개발 및 이용·보급의 방법과 제7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
등) ① ~ ⑤ (생 략)	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
	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
	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
	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
	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・보급
	<u>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
	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
	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・보
	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
	공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필요
	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⑧ 제6항에 따른 개발 및 이용
	•보급의 방법과 제7항에 따른
	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<u> 령으로 정한다.</u>